

개호서비스 이용료 등의 의료비 공제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은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액

-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호서비스 이용료, 숙식비의 본인 부담액
- 개호노인 보건의료시설 ……개호서비스 이용료, 숙식비의 본인 부담액
- 개호노인 복지시설 ……개호서비스 이용료, 숙식비의 본인 부담액의 절반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포함)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는 비용

- 개호보험시설의 일상생활비, 이발·미용비 등의 서비스비용
- 이용자의 특별한 희망에 따른 숙식비

● 재택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액

- 의료 관련 서비스 ……개호서비스 이용료(단기입소 요양개호는 숙식비도 대상)의 본인 부담액
방문간호, 방문재활훈련, 재택요양관리 지도, 통원 재활훈련, 단기입소 요양개호 등
- 복지 관련 서비스 ……개호서비스 이용료의 본인 부담액
방문개호(생활원조가 중심인 서비스는 제외), 방문목욕개호, 통원개호, 단기입소 생활개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치매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등
- ※ 복지 관련 서비스는 재택 서비스플랜(케어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 의료 관련 서비스(의료보험의 방
간호를 포함)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생활원조가 중심인 방문개호 서비스 이용료
- 통원개호, 단기입소 생활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의 숙식비·일상생활비 등
- 단기입소 양호개호에서 이용자의 특별한 희망에 따른 숙식비

● 개호복지사 등에 의해 가래 흡인 등이 실시되었을 때

원래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안 되는 개호 서비스라 할지라도, 개호복지사에 의해 가래 흡인·경관영양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재택 서비스 등에 필요한 본인 부담액의 10%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저귀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지원받을 때 「확인서」 교부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약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저귀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저귀 비용의 영수증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상태」, 「치료에 기저귀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발급한 「기저귀 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비용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분께서는 의사의 증명 대신 「확인서」를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청의 개호보험 청구에서 교부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공제 대상자 인정서」를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수첩 등을 교부받지 않은 분이라도, 65세 이상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분 중에서, 그 증상의 정도가 장애인수첩 등의 교부기준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장애인 공제대상자 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제시하고, 소득세나 개인 시민·부민세를 신고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는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청 보건복지과 (보건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